

동 물 보 호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4.26. 공포)됨에 따라, 세부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 사육포기동물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 사유 신설, 사육포기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 등

2. 주요내용

가. 동물등록 제외지역 단서 추가(안 제9조 단서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동물등록 제외지역(도서 지역, 등록업무 대행자가 없는 지역 등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 제외(지역에 관계없이 등록 의무화)
- 2) (제·개정 사유)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영업, 동물학대 등 개선을 위한 관리 강화 차원에서 ‘동물생산업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등록대상동물에 포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 관리 목적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단서 신설을 통해 영업장 등록 의무화

나.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시 보호비용 면제사유 신설(안 제27조 제1항 제1호~제3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지자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시 보호 비용 면제 사유* 신설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2) (제·개정 사유)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비용 면제 규정 마련 필요

다.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사유 추가(안 제27조 제3항 제5호 신설)

- 1) (제·개정 주요내용)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에 대하여 사육포기 동물 인수 신청 및 인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2) (제·개정 사유)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맹견의 경우 소유자가 기를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호·관리가 필요. 이에 소유자의 의사로 사육을 포기하는 경우 지자체가 해당 맹견을 인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라.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및 구체화(안 제37조, 제42조 및 제47조 개정)

-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영업 허가 신청·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구체화* 및 추가** 등

* 사업계획서 →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장소, 동물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 법령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그밖의 지자체장이 요청한 서류

- 2) (제·개정 사유) 동물 관련 영업장 내의 학대 행위 예방 및 학대 발생 시 근거자료 수집을 위하여 설치 의무장소를 추가하려는 것임

마. 영업장 폐쇄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 제시 명확화(안 제53조 개정)

- 1) (제·개정 주요내용) 반려동물 영업자가 법령 위반으로 영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류를 제시하도록 규정
- 2) (제·개정 사유) 영업장의 폐쇄는 침익적인 행정행위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명확한 근거자료 제시가 필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물 인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제2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로 한다.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로서 해당 소유자의 맹견사육을 위한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인력”을 “종사자 등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6.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인력”을 “종사자 등 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

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확인”을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으로 한다.

제51조제1항제3호 중 “추가교육:”을 “추가 교육:”으로 한다.

제53조 중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다음 각 호의 증표 및 서류”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업장 폐쇄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2. 조치기간, 조치범위 및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

별표 10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별표 10 제2호가목1)바)(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개”를 “번식이 가능한 12개월 이상이 된 개 또는 고양이를 사육·관리하며 개”로 한다.

별표 11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영 별표 3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해야 한다.

별표 11 제2호라목1)가) 중 “일반형”을 “유형별 세부기준의 일반형”으로 하고, 같은 1) 나) 중 “경형”을 “규모별 세부기준의 경형”으로, “화물자동차로서,”를 “화물자동차로서, 유형별 세부 기준의”로 한다.

별표 1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단서 중 “영업”을 “영업·광고 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파목을 삭제하고, 파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1)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목 5)가)부터 자)까지 외의 부분 중 “계약서를 제공할”을 “계약서 및 증명 서류 제공”으

로, “판매하는”을 “판매·광고 등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5) 가) 중 “등록번호, 업소명”을 “허가번호, 상호”로 하며, 같은 5) 마)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5) 자)를 삭제하며, 같은 목 8) 중 “경우에는 등록번호, 업소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을 “경우 다음 사항을”로 하고, 가)부터 라)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하거나 녹화·기록한 정보를 촬영 또는 녹화·기록한 날부터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동물운송업자는 3일간 보관해야 한다.

파. 「동물보호법」에 따라 작성·보관하는 문서를 허위·거짓으로 작성·보관하지 않아야 한다.

하.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매월 거래내역을 시장·군수·구청장에서 보고해야 한다.

거.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영업·광고 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너.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된 경우 해당 시설과 구분되도록 누구나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출입구를 차단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더. 종사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등 영업장 종사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러.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 중 맹견취급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맹견이 영업장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영업장 밖으로 탈출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맹견을 번식, 수입, 양도·양수한 경우나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에는 제40조의2제6항에 따른 정해진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3) 영업장 반경 500m 내 주민 등을 대상으로 맹견을 취급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함을 안내하여야 한다.
- 4) 영업장의 외벽은 어린이 등이 손을 집어넣어 맹견과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영업장은 콘크리트 등 맹견이 땅을 파고 탈출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책임보험, 중성화 등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기질평가를 거치지 않은 맹견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질평가 비용·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 10) 영업장에서 번식 목적의 개를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그 개들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여야 한다.
- 1)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직접 대면하여 판매·전달해야 한다.
 마) 판매 동물에 대한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진단서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 증명서

가) 허가번호,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나) 판매업자가 사용할 계약서

다) 대면 판매, 계약서 및 증명 서류 제공 의무

라) 판매 동물의 개체별 정보(품종, 암수, 출생일, 예방접종 및 진료 사항 등)

별표 12 다목 제2호9)다) 중 “한다”를 “하고, 그 검진 내역을 해당 수의사의 날인을 받아 1년간 보관해야 한다”로 하며, 같은 9) 마) 중 “별지 제36호서식”을 “별지 제20호서식의 허가증 및 별지 제36호서식”으로, “제출받아 기재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제출받은”을 “제출받아, 제출받은 허가증이 사실과 같고”로, “판매기록이 기재된”을 “판매기록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것을 확인한”으로 하고, 같은 9)자)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라.8) 중 “영업등록증”을 “영업 허가증”으로 하고, 마.7) 중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 사료 및”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한다.

자) 경매되는 동물의 출하자의 법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지체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별표 12 바.2) 중 “충분히 제공해야 하며, 사료나”를 “항시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별로 적정량의 물, 사료 및”으로,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적절히 관리해야”를 “제공하여야”로 하며, 바.4) 중 “소유주”를 “소유자”로 하고, 바.6)가)부터 마)까지 외의 부분 중 “제공”을 “제공하고 그 사본을 1년간 보관”으로 하며, 아.6) 중 “소유주 등”을 “소유자등”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십시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대표소유자)
* 단독소유의 경우이거나 소유자 중 1인만 등록하기를 원하는 경우 신청인은 1인만 기재하면 되며, 공동소유자를 함께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 비고 칸에 대표소유자 여부 명기 ※ 현재 거주지가 주소와 다를 경우 현재 거주지 주소를 함께 기재합니다.					
동물관리자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성명	직위	전화번호	관리장소(주소)	

동물	동물등록번호										
	이름	품종	털색	성별		중성화		특수목적		출생일	특이사항
				암	수	여	부	여	부		

※ 특수목적 '여'인 경우 체크 : [] 수렵 [] 목축 [] 경비 [] 기타()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1. 무선식별장치 체내삽입: 1만원 2. 무선식별장치 체외부착: 3천원
담당 공무원	1.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확인사항	2.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공동등록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	--

별지 제1호서식의 뒤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이하 “등록동물”이라 합니다)의 소유자는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합니다)이 변경된 경우

나.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다. 소유자의 주소 또는 전화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전화번호를 말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려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분실신고를 한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마.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바.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사.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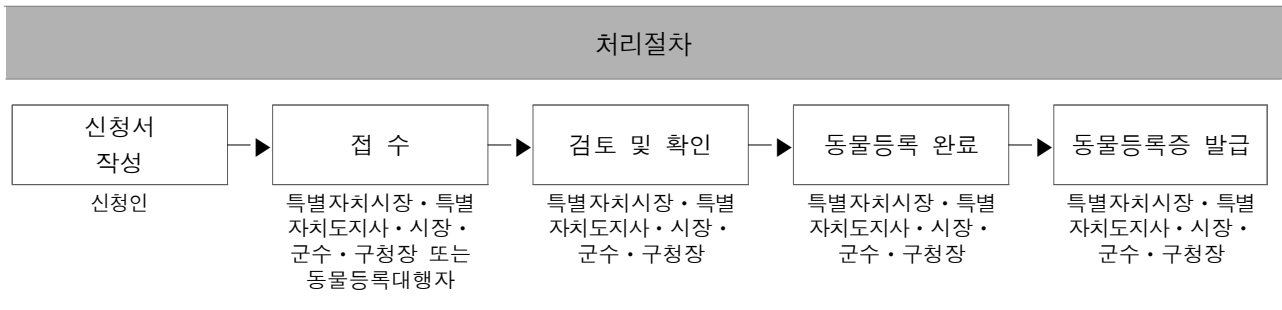
아.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2.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변경신고가 된 것으로 봅니다.

3. 동물을 공동 등록하는 경우, 대표소유자는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동물을 공동 등록하는 경우, 대표소유자 외 공동소유자에게도 「동물보호법」상 등록 동물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며 미이행 시 벌칙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의 주소나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 분실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에 대하여 동물정보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법인명):”을 “(법인명): 000(대표소유자), 000(공동소유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특징”을 “나이/체중”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 동물장요업 - 장례식장: 설치 / 미설치 - 동물화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건조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수분해장시설: 설치 / 미설치 - 봉안시설: 설치 / 미설치	☐ 동물생산업 ☐ 동물수입업 ☐ 동물판매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취급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인력 현황(종사자 수)	명
-------------	-----------------------------	--------------	---

동물생산업 신청자 작성 항목

생산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품종별 사육 마릿수	품종명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소규모 동물생산업 여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11 제2호가목1)바)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 표시합니다.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맹견 사육 여부	[]예, []아니요	(참고) 맹견의 범위(「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테퍼드셔 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	---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4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장	명칭(상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업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 []동물운송업 * 다수 영업의 허가 신청 시 각각의 영업 허가 신청서 작성 필요
--	--	---

동물전시업 신청자 작성 항목

인력 현황 (종사자 수)	명	품종명	마릿수		
			암컷	수컷	총합
전시동물의 종류	[]개 []고양이 []그 밖의 동물()	품종별 전시 마릿수			
			* 사육 품종별로 모두 작성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앞쪽 중 “「동물보호법」 제76조”를 “「동물보호법」 제7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 제2호 중 “(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합니다)”를 “(휴업·폐업의 경우만 해당하며, 동물장묘업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로 하며, 같은 뒤쪽 제1호 중 “기간을 정하여 신고한 경우 그 기간”을 “기간”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하여야 합니다”로 한다.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후단 개정규정, 별표 12 제1호차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2 제2호가목10)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동물등록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면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변경사항란은 해당되는 항목에만 기재 합니다. (앞쪽)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동물	이름	동물등록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 소유자 변경 * 대표소유자명: (공동등록의 경우만 작성)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소유자의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	성명(법인명)			
	성명(법인명)			
[] 무선식별장치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여 못 쓰게 됨	동물등록번호			
[] 무선식별장치를 변경하 는 경우	동물등록번호			
그외	[] 등록동물을 잃어버림 []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음 [] 등록동물이 죽음 []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음 [] 그 밖의 사유			

변경사항 발생일

등록동물을 잃어버리거나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또는 등록동물을 더 이상 국내에서 기르지 않는 경우
그 경위(날짜, 장소, 사유 등)

「동물보호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동물등록증	수수료 무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3. 공동등록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소유자의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동의]

1. 동물등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위 신고인의 정보와 신고내용을 등록 유효기간 동안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유실동물의 반환 등의 목적으로 등록동물의 소유자의 정보와 등록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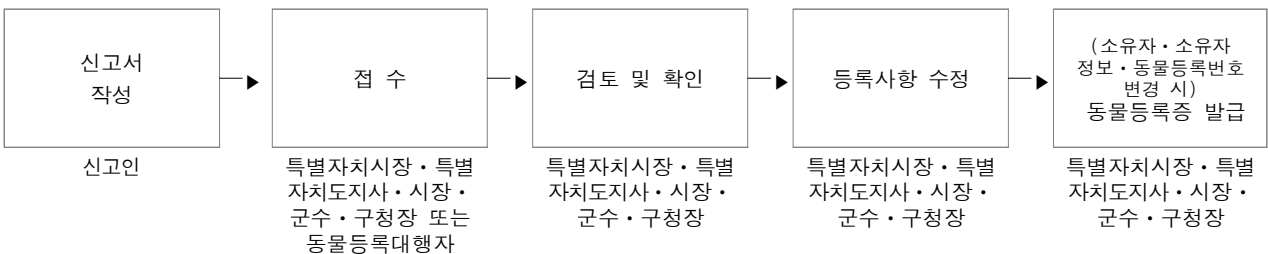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를 모두 작성합니다.
2.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해당 소유자의 변경된 내용만 작성합니다.
3. 동물의 이름 등 등록동물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 의무는 없으나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잃어버린 등록동물의 정보는 동물정보시스템에 공고됩니다.
5.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6.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변경신고 후 1년 동안 등록동물을 다시 찾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7.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1년이 지나면 등록사항이 말소됩니다.
8. 동물등록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대표소유자는 변경신고 시에 반드시 공동소유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동소유자를 추가하는 경우 변경 후만 작성, 공동소유자를 삭제하는 경우 변경 전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동물 인수신청서

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며 소유권을 양도합니다.

1. 동물정보

동물이름		동물등록번호	
동물종류(품종)		성별	☐ 암 ☐ 수
동물나이	년 개월 주령	생년월일	☐ 모름
체중(kg)		중성화여부	☐ 여 ☐ 부 ☐ 모름

2. 포기사유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요양(진단서 등 병원확인서 첨부)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관련 증명서류 첨부)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인한 시설 파손 등(관련 증명서류 첨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시설 입소(관련 증명서류 첨부)	
「동물보호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로서 해당 소유자의 맹견사육을 위한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	

개: 본인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에 해당하는 소유자이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서명:)

고양이: 본인은 입소담당자로부터 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통해 해당 동물이 본인 소유임을 확인받았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3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확인 ☐ (서명:)

본인은 해당 동물의 수의학적 및 행동학적 병력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였으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할 경우 해당 동물이 내원했던 동물병원에 연락하여 필요한 모든 의료정보를 제공받는 데 동의합니다. 동의 ☐ (서명:)

동물병원 주소	
연락처	

소유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읽었으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허가번호 제 호

(앞쪽)

영업 허가증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영업 종류	※ 동물생산업의 경우 생산동물의 종류, 맹견 사육 여부, 소규모 동물생산업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장묘업의 경우에는 시설(장례식장, 동물 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봉안시설) 설치 여부를 함께 표시 ※ 동물판매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알선·중개, 경매 알선·중개)를 함께 표시				
허가 면적	전체	시설별			
허가 사항 및 조건					
비고					

「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등록번호 제 호

(앞쪽)

영업 등록증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장	영업장의 명칭(상호)		연락처		
	주소				
대표자 (법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연락처		
영업 종류	※ 동물전시업의 경우 전시동물의 종류를 함께 표시 ※ 동물미용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종류(일반, 자동차 이용)를 함께 표시 ※ 자동차를 이용한 동물미용업 또는 동물운송업의 경우 자동차등록번호, 차종을 함께 표시				
등록 면적	전체	시설별			
등록 사항 및 조건					
비고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영업을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변경사항

변경일자	변경사항	변경내용	기재자 (직급·성명)

동물생산·수입·판매업 개체관리카드

※ 햄스터, 기니피그는 무리별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할 수 있음

생산·수입 시 작성사항					
구분	개체정보		어미정보(생산업만 기재)		
동물등록번호					
개체관리번호					
출생일					
동물의 종류					
품종					
성별					
특성(털색 등)					
수입정보(수입) 번식정보(생산)	수입일	수입국	출산일	출산마릿수 (암, 수)	
건강정보	기록일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건강상태, 조치내역 등	기록일	질병명(유전병력 포함), 건강상태, 조치내역 등	
경매 시 작성사항					
수의사 검진사항			수의사 (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낙찰자(업체명)			경매일		
영업자 정보(판매처의 정보까지 모두 기입되어 있어야 함)					
구분	영업장의 명칭(상호)	영업 허가번호	주소·연락처	반입일	반출일
생산·수입				※번식일 (생산업의 경우)	
판매 (경매 포함)					
소유자 등	※소유자의 성명	※동물등록번호			

* 해당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작성할 것.

3. 영업실적(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제출일: 년 월 일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1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2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3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4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5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6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7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8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 (단위 : 마릿수)

** 기재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

구분			생산·수입·판매								장묘
증감			증가현황		보유현황			감소현황			처리
월	동물의 종류		생산	수입·구입	어미	판매 대상	그외	판매	사망	기타 손실(사유)	
9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0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1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12월	축종1	품종1									
		품종2									
		총합									
	축종2	품종1									
		품종2									
		총합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9조(동물등록 제외지역) ----- ----- ----- ----- ----- ----- ----- ----- ----- ----- . 다만, 영 제4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제27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 ----- ----- ----- ----- ----- ----- ----- ----- ----- . 다만, 동물 인수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u><신 설></u>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u><신 설></u>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44조제4항에서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유자등이 다른 방법으로서는 정상적으로 동물을 사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③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맹견 사육허가가 거부된 경우로서 해당 소유자의 맹견사육을 위한 여건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다만, 법 제18조제4항 후단에 따라 해당 맹견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6. ----- 제5호까지 -----

있다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영업의 허가)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인력 현황</u>	2. <u>종사자 등 인력</u> ----- -----
3. <u>사업계획서</u>	3. <u>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u>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u>신 설</u> >	6. <u>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u>
< <u>신 설</u> >	7. <u>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u>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⑦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할 때 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u>법 제73조제1항</u> 각 호의营业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u>영업등록신청서</u>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u>①법 제73조제1항</u> ----- ----- ----- ----- ----- ----- -----.
1. <u>인력 현황</u>	2. <u>종사자 등 인력</u> ----- --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u>사업계획서</u>	3. <u>영업대상, 영업 세부방안, 영업장소, 동물에 대한 사육·관리 계획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u>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u>
<u><신 설></u>	6. <u>그 밖에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u>

	<u>수·구청장이 요청한 서류</u>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u><신설></u>	⑦ <u>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등록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u>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허가증(등록증) 원본(폐업신고의 경우만 해당하며 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동물처리계획서(동물장묘업자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u>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을 할 때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u>	제47조(휴업 등의 신고) ① ----- ----- ----- ----- ----- ----- ----- ----- ----- ----- ----- ----. <u><단서 삭제></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8조(직권말소) ① 특별자치시	제48조(직권말소) ① -----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 허가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확인</u>해야 한다.	----- ----- ----- -----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종류, 교육 시기 및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1조(영업자 교육) ①-----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영업정지처분에 따른 <u>추가교육</u>: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3. ----- <u>추가 교육</u>: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영업장의 폐쇄)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영업장을 폐쇄하는 관계 공무원은 <u>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u>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53조(영업장의 폐쇄) ----- ----- ----- 다음 각 호의 <u>증표 및 서류</u>----- -----.
<u><신 설></u>	1. <u>영업장 폐쇄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u>

<u><신 설></u>	<u>2. 조치기간, 조치범위 및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u>
--------------------	--